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
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이금성

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39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6. 4. 10.
- 회 부 일 : 2026. 4. 10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정책실명제 책임관 임무 규정(안 제3조)
-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규정(안 제4조)
-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(안 제5조)
-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(안 제6조~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, 제63조의2, 제63조의3, 제63조의5
- 기타
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3771)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3408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8502)
- 입법예고(2026. 2. 27. ~ 2026. 3. 19.) : 제출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, 금산군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 - 기획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였고,
 - 5억 원 이상의 공사, 1억 원 이상의 용역 등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설정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.
 -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‘금산군 성과평가 위원회’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.
- 다만, 안 제4조제2항에는 정책 수행자뿐만 아니라 설계자·시공회사 대표, 감리자 등 민간 영역까지 실명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,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으나, 민간인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